

출석통지서

소청인 성명	
주소	
출석 이유	
출석 장소	
출석 일시	
그 밖의 사항	

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78조에 따라 (중앙)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(중앙)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



유의사항
-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위 일시에 출석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. -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. -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소청인의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